

# 2025년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화성지역 소공인 작업장의 생산 능력 향상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30일

화성상공회의소

##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나. 사업목적 : 소공인 작업능력 향상 및 경영 안정화 발판 마련

다. 사업기간 : 2025. 05월 ~ 11월

라. 사업내용 : 소공인 생산 능력 향상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물품·장비 지원

- 근로자 안전 장비 최신화 및 작업장 내 재해 발생 고위험 시설 개선 지원
- 재해 발생 고위험 장비 및 방호 장치 등 안전상 조치 품목 지원

지원분야	품목명
근로환경 개선지원	작업자 접근 알림장치, 입·좌식 근로자용 작업의자·스тол, 내충격성 작업장 바닥매트, 작업발판, 높낮이 조절 작업대 및 의자, 습기제거 및 환기설비, 국소배기장치, 집진·환기장치, 실 내 작업장 불침투성 바닥, 흡음·방음·댐핑 시설, 유해물질 취급 작업장 세척·세안시설, 유해물질 보관함, 유해광선 차단판, 유해가스 경보기, 이동식 사다리, 안전대 부착 설비, 전도방지 바닥 청소기, 적재대, 공구함, 안전보건 표지판, 개인보호 장구, 고소작업대, 컨베이어, 이동식 대차, 외골격 로봇 등
산업안전 강화지원	비상전원장치, 고압가스용기 전도방지장치, 방호장치(전단기, 프레스, 용접기, 로울러기, 톱기계, 다이캐스팅기, 사출성형기, 압연기·압출기, 선반, 지게차 등), 추락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끼임방지시설, 소음방지시설, 낙하물방지망, 사각지대 표시대 및 반사경, 위험물질 자동 경보기, 절연구조 전동공구, 이탈방지끈 및 안전줄, 누전차단기, 대피 유도등 화재감지기, 화재예방 및 소화설비, 비상대피물품 등
사전진단	산업·안전 컨설턴트 타당성 검토, 사전 현장진단 및 개선 권고

## 2. 세부 내용

### 가. 지원 내용

- 지원규모 : 45개사 내외
- 지원대상 : C22,C24~C31 업종 10인 미만 소공인(일부지역 제외)

산업분류코드	주요업종	산업분류코드	주요업종
C22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C28	전기 장비 제조업
C24	1차 금속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5	금속가공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동탄 1~9동, 병점동, 진안동, 반정동, 반월동, 기산동 지역 제외

### ○ 지원방법

- 산업재해 예방 물품·장비 비용지원 (1개사 당 최대 480만원)

1) 산업·안전 컨설팅 제공 (1개사 당 2시간 X 1회)

2) 480만원 한도 내 공급가액의 90% 지원

※ 공급가액 잔금 + 부가세는 소공인 자부담

### ○ 모집기간 : 05월 30일(금) ~ 06월 16일(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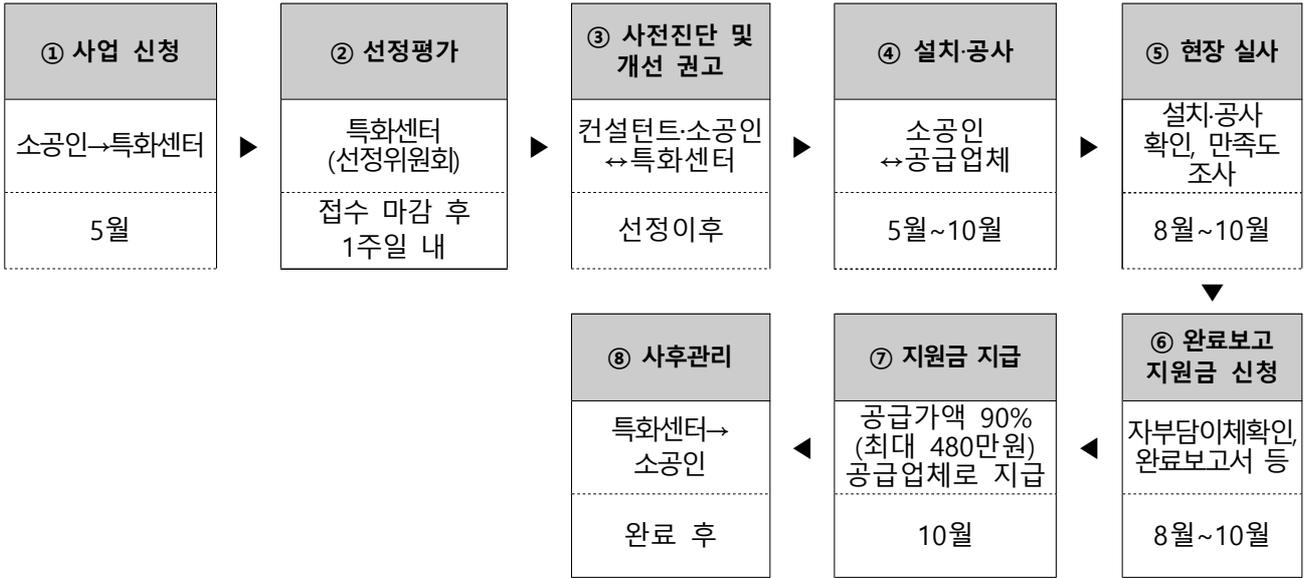
※ 모집 미달되는 경우, 모집기한 연장

○ 지원업체 선정 기준 :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제출서류를 토대로 선정평가

○ 지원업체 선정 통보 :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기업 통보

※ 선정평가 점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할 수 없음

## 나. 지원 절차



## 다. 세부 추진 절차

절차	업무	세부내용
①	사업 신청	- (소공인) 신청서, 추진계획서 등 서류 준비·작성하여 제출 - (센터) 서류 접수 및 검토 후 심사위원 구성
②	선정평가	- (센터) 선정 평가 및 지원 소공인 선정 - (센터→소공인) 선정 소공인 대상 지원금 신청 관련 개별 안내
③	사전진단 및 개선 권고	- (컨설턴트→소공인) 소공인 사업장 안전 진단 - (센터→소공인) 컨설팅 결과를 기반으로 품목 수정 요청 - (소공인→센터) 권고 사항 수정 후 회신
④	설치·공사	- (공급업체↔소공인) 기한 내 설치·공사 진행
⑤	현장실사	- (센터→소공인) 현장실사를 통한 적합성 검토 · 견적서 상의 품목과 동일 여부 확인 · 사업장의 적합한 품목인지 적합성 검토 실시
⑥	지원금 신청	- (소공인→센터) 지원금 지급 신청서, 완료보고서 등 서류 제출 · 1차 신청: 08월 예정 / 2차 신청: 09월 예정
⑦	지원금 정산 및 집행	- (센터→공급업체) · 480만원 한도 내 공급가액 90% 지급 · 공급가액 잔금 + 부가세는 소공인 자부담 · 1차 정산: 08월 예정 / 2차 정산: 09월 예정

※ 세부 추진 절차는 변경될 수 있음

**라. 지원 제외 대상**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업체, 임금체불 업체는 지원 불가
- 사업 선정통보 후 기한 내 설치·공사가 완료되지 않거나, 선정통보 이전에 선 진행한 설치·공사 건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 사전변경승인 없이 공급업체를 변경 및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지원 불가
- 품목 부적격 등 센터 판단에 의거 지원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 불가
-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타 지원사업으로 기 지원 받은 경우 지원 불가
- 해당사업 지원 전 센터 사업에 공급업체로 참여한 업체는 지원 불가

**마. 지원 유의사항**

- 지원 신청내용 변경 및 포기
  - 선정된 지원사항의 주요내용 변경, 공급업체 변경 시 사전 승인을 득해야함
  - 사전 센터 협의 없이 지원포기의 경우 이후 2년간 센터 지원사업 참여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공급업체 선택 시 유의사항
  - 공급업체는 해당 품목을 공급하는 업체 중에서 소공인이 직접 복수견적을 받아 가격이 낮은 업체를 선정
    - ※ 화성시 소재 공급업체 선정 우선 권유하나 부득이할 경우 예외 인정
  - 당해 센터사업(교육, 마케팅, 컨설팅, 자율사업) 수혜업체는 공급업체로 선정 불가하며, 당해 공급업체 또한 센터 사업에 참여 불가
  - 신청서 견적품목과 관련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공급업체를 선정해야 함
  - 신청업체 본인과 가족관계(부모, 조부모, 형제 등)에 해당하는 공급업체 선정 불가
  - 납품 관련 이견사항은 소공인과 공급업체간 해결해야 함
  - 공급업체에 지원금 입금 시점을 사전에 반드시 숙지시켜야 함
- 기업당 사업지원 상한에 관한 사항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지원사업 중 당해 연도 **최대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구분	소상공인진흥공단	화성시
지원한도	5백만원	5백만원
해당사업	카탈로그 제작 지원, 공동 국내박람회 참가, 공동 연구회	기업홍보 동영상 제작 지원, 홈페이지 제작 지원, 브랜드이미지 제작 지원, 국내·외 인증 지원, 시제품 개발 지원, 산업재해 예방지원, 소공인 ESG경영 친환경 제조환경 구축사업, 소공인 스마트 제조 도약 지원사업

※ 교육 및 컨설팅 사업은 해당없음

- 단, 사전 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하여 기업의 지원한도를 7백만원까지 조정할 수 있으며, 이때 개별 기업의 누적 지원금액 동일 감안하여야 함

### 3. 신청 안내

가. 신청 방법 : 온라인 이메일 제출 (hsmfsc@gmail.com)

나. 신청 기간 : 05월 30일(금) ~ 06월 16일(월)

다. 신청 서류

#### 1) 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

제출서류	
①	사업신청서 1부 [서식1]
②	개인정보 동의서(상공회의소, 공단) 1부 <공통1>
③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공통2>
④	중소기업 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 명시 必) 각 1부 <공통3>
⑤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1부 (23~24년) <공통4>
⑥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공통5>
⑦	주업증명(업종코드) 조회 화면 인쇄본(서명 필수) 각 1부 <공통6>
⑧	주업종 영업사실 확인서 1부 <공통7>
⑨	추진 계획서 1부 [서식2]
⑩	확약서 1부 [서식3]
⑪	지원 사업 대상선정 평가 기준표 1부 [서식4]
⑫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각 1부 [서식5]

#### 2) 선정 승인 이후 제출서류

제출서류	
①	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
②	완료보고서 1부
③	공급업체 견적서 1부
④	공급업체 사업자 등록증1부
⑤	공급업체 통장 사본 1부
⑥	세금계산서 1부
⑦	자부담 입금 확인증 (부가세 + 지원금초과금액) 1부

#### 4. 접수 및 문의처

담당자	연락처	F.A.X.	E-mail
양세현 매니저	070-7774-3367	031-354-3642	hsmfsc@gmail.com